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 중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서울서부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박재익

전화 02-3270-4394 / 팩스 02-3270-4310

보도자료

2020. 10. 29.(목)

제목

일본군 위안부 관련 명예훼손 등 사건 수사결과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☑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 등 (「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1조 제1항)
- ☑ 관련사건을 공소제기 하면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사건(제10조 제1항 제3호)
 - 피의자, 처분일시, 죄명, 처분주문, 수사경위, 수사상황(제10조 제2항)

서울서부지검 형사1부(부장검사 박현철)는 금일(10. 29.) 「○○대학교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 및 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」을 한 A 교수를 명예훼손으로 불구속 기소하였음

※ B단체에 대한 모욕 부분은 혐의없음 처분하였음

I

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

① 피고인

- A○○(○○대학교 교수)

② 공소사실 요지

- '19. 9. 19. ○○대학교 전공과목 강의 중 50여명의 학생들에게 '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춘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다'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- 위 강의 중 'B단체가 일본군에 강제동원 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'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
- 위 강의 중 'B단체 임원들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이며 B단체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어 북한을 추종하고 있다'는 취지로 허위사실 발언 [명예훼손]

II 수사 경과

- '19. 9. 23. C시민단체, 서울서부지검에 '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명예 훼손' 고발 (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)
- '19. 10. 1. B단체, 서울서부지검에 'B단체에 대한 명예훼손 및 모욕' 고소 (서대문경찰서 수사지휘)
- '20. 3. 31. 서대문경찰서, 사건 송치
- '20. 4. ~ 10. 피의자 조사, 관련자료 확보, 관례 및 법리 검토 등
- '20. 10. 29. 명예훼손 불구속 기소, 모욕 불기소(혐의없음) 처분

III 향후 계획

- 해당 사건의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,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명예훼손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음 ☒